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○ 이 내용은 2015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정리한 것임.

○ 2014. 12월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.

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/ 관계 부서
1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	<신설>	○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림탄소모아(산림탄소등록부) 시스템을 통해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 신청	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'15. 상반기) 산림정책과 (042-481-4199)
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	○ 연구개발비 사용 변경 한도 상향 조정 등 집행 기준 개선 -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중 5백만원 이상의 장비·시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 필요	○ 「국가연구개발규정」에서 정한 변경 승인한도인 3천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 ○ 「국가연구개발규정」에서 정한 제출기간인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○ 「국가연구개발규정」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%이상 사용하도록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	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('15. 1월)
	○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로 제한	○ 「국가연구개발규정」에 준하여 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을 국가기관 간 통일 - 20% 이하인 경우 : 5년 이내 → 3년 - 20% 이상 30% 이하 : 7년 이내 → 4년 - 30% 초과인 경우 : 10년 이내 → 5년 - 둘 이상 병합 : 10년 이내 → 5년	산림정책과 (042-481-4137)
3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 표시 품목 확대	○ 목재제품 9개 품목 - 합판, 방부목재, 제재목, 목재펠릿, 섬유판, 파티클보드, 목탄, 목재브리켓, 목재칩	○ 목재제품 15개 품목 - (추가) 목질바닥재, 집성재, 성형목탄, 목재플라스틱복합재, 배향성 스트랜드보드, 난연목재	목재제품 품질 규격·기준 고시 ('15. 12월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)
4 우드그랩 품셈 반영	<신설>	○ 숲가꾸기 및 직영벌채 설계 시 우드그랩 품셈 반영	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('15. 1월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5 원목규격 개정	○ '원목의 품등' 중 원료재급 원목의 재장 기준 - 1.8m 이상	○ 원료재급 원목의 재장 기준을 2.1m 이상으로 상향 조정 - 시장 수요, 운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	원목 규격 ('15. 하반기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)
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	<신설>	○ 노후화된 건조시설, 제재·가공시설, 방부시설 등의 현대화 개선 지원 (30개소)	'15년 사업계획 ('15. 1월) 목재생산과 (042-481-4204)
7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	<신설>	○ 가로수 수목 생장으로 인한 신호등,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가림현상 제거 - 교통안전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전지·전정 제도화 ○ 가로수 관리인식표 부착법 개선 조치 -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법 제도화 *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는 못질 금지 및 현수막 부착끈 제거 등	'15년 사업계획 ('15.1월) 도시숲경관과 (042-481-4227)
8 학교숲을 명상숲으로 전환	○ 학교숲 조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학교 내에서 추진	○ 학교숲 사업명칭을 폐지하고, 명상숲으로 전환하여 지특회계로 학교와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	'15년 사업계획 ('15.1월) 도시숲경관과 (042-481-4226
9 대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	○ 국유림 대부료 - 연간 증가율 (9%) 부과 -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(20/1,000)부과	○ 국유림 대부료 연간 증가율 하향조정 및 감면확대 - 연간 증가율 : (당초) 9%→(변경) 5% -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감면 (당초) 20/1,000→ (변경)10/1,000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5. 상반기)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8)
10 공·사유림 교환제도 개선	○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지방산림청별 운영 ○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- 10ha 이상인 경우 <신설>	○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- 산림청 1차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확대 구성하여 국유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 강화 ○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개정 - 특별시·광역시 : 1ha 이상 - 제주특별자치도와 시(도농복합 읍·면제외): 3ha 이상 - 그 밖의 지역 : 5ha 이상 ○ 공·사유림 교환 추진 시 -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취득재산의 면적이 처분 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면적 규정 신설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5년 상반기)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5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종 전</th><th>달라지는 내용</th><th>관련 법규
(제도 시행일)
관계 부서</th></tr>
<tr><td>⓫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 확대</td><td><신설></td><td>○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시설에 다음 사항을 추가
- 숙박시설 : 트리하우스
- 편익시설 : 모노레일
- 체험시설 : 로프체험시설
- 체육시설 : 산악자전거시설·행/페러글라이딩 시설
- 안전시설 : 방송시설</td><td>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4. 12. 4)
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211)</td></tr>
<tr><td>⓬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</td><td><신설></td><td>○ 재난·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</td><td>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(훈령) ('14. 12. 5)
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211)</td></tr>
<tr><td>⓭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</td><td>○ 치유의 숲 면적 기준
- 국가 및 지자체 : 50만㎡ 이상
- 그 외 : 30만㎡ 이상</td><td>○ 치유의 숲 면적기준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국가 및 지자체</th><th>그 외</th></tr><tr><td>일반지역</td><td>50만㎡ 이상</td><td>30만㎡ 이상</td></tr><tr><td>특별시, 광역시 지역</td><td>25만㎡ 이상</td><td>15만㎡ 이상</td></tr><tr><td>도서(섬) 지역</td><td>-</td><td>10만㎡ 이상</td></tr></table></td><td>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4. 12. 4)
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124)</td></tr>
<tr><td>⓮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</td><td><신설></td><td>○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-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
-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
-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</td><td>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('14. 12. 4)
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124)</td></tr>
<tr><td>⓯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</td><td>○ 치유의 숲에 한정</td><td>○ 치유의 숲,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 또는 숲길</td><td>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('14. 12. 4)
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124)</td></tr>
</table>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6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	○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- 의료, 보건, 간호 또는 산림 관련학과 학위 - 산림치유 관련 근무경력 -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	○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추가	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4. 12. 4) 산림휴양치유과 (042-481-4124)
17 산림교육전문가 자원봉사 지원제도 도입	<신설>	○ 지원 대상 :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○ 숲해설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산림교육 활동 인력을 보강하고 숲해설가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	'15년 사업계획 ('15. 1월) 산림교육문화과 (042-481-1814)
18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	<신설>	○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 ('15.상반기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)
19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	○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-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* 1인 1회 지원에 한함(다음년도 추가지원 불가) ○ 지원내역 - 임도·작업로 시설, 목재생산장비 등 8종	○ 지원자격 및 요건 -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 ○ 지원내역에 생산 운반시설장비(모노레일), 체험시설 추가	'1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('15. 1월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, 4195)
20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	<신설>	○ 사업 대상 : 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○ 지원 대상 : 임업인, 생산자단체 ○ 지원 비율 - (소액) 국비 20%, 지방비 20%, 융자 20%, 자부담 40% - (공모) 종자·종묘구입비 30% 내에서 지원 ○ 지원 기준 : 본당 3,760원(W 10cm × L 120cm) * 임업인 3천본 이내,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	'1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('15. 1월)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8~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1 임산물 생산·유통시설 지원 확대	○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- 냉동탑차 지원	○ 지원 범위 - 냉동탑차 및 일반 화물차량 지원 - 파렛트, 운반용 상자 등 유통장비 추가	'1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('15. 1월)
	○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품목 확대 - 수실류,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에 한정	○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	
	○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 규모 완화 -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,000㎡ 이상	○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,000㎡ 미만이라도 소득창출·경영목표 달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*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1 참조	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6~9, 4194, 4196)
22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	○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(토양개량) 보조율 조정 - 토양개량 : 국고 70%, 지방비 20% 자부담10%	○ 토양개량 :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 ○ 유기질비료 : 국고+지방비 80%이내, 자부담 20%이상 * 정액지원	'1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('15. 1월)
	○ 조경수 관정시설(직접) 보조율 조정 - 국고 40%, 자부담 60%	○ 국고 20%, 지방비 20%, 융자 20%, 자부담 40%	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4, 4196)
23 정원정책 신설	<신 설>	○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및 정책사업 추진 -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·운영 - 정원지원센터 설치·운영 - 코리아가든쇼 개최 - 꽃과나무 상담소 운영	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('15. 6월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9)
24 산림보호구역 행위 완화	○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방시설 등 재해시설 설치 시 보호구역 해제 절차 이행	○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시설 등의 설치행위를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토록 완화 - 송전탑 긴급복구 허용 - 사방시설,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허용 -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	산림보호법 시행령 ('14.12.4.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2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	○ 인건비 : 42천원/일	○ 인건비 : 45천원/일 - '14년 대비 3천원 인상	- 산불방지과 (042-481 -4258)
26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	○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	○ 산사태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을 선발하고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받도록 선발기준 완화	산림보호법 시행령 ('14. 12월) 산사태방지과 (042-481 -8844)
27 산림병해충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	○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원 자격 - 기술1·2급 : 100ha 미만	○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- 기술1급 : 300ha 이하 - 기술2급 : 200ha 이하	산림보호법 및 시행규칙 ('14.12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 -4269)
28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	○ 생산확인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- 유효기간 : 30일	○ 생산확인표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- 유효기간 : 45일	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('14.12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 -4269)
29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확대	<신설>	○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·건조하여 제재목으로 활용 * 피해극심지역에 대량훈증 시설 및 장비 지원(3개소, 42억원)	'15년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계획 ('15. 1월) 산림병해충과 (042-481 -4076)
30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	<신설>	○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(사업우선순위에 추가)	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('15.1월) 산림생태계 복원팀 (042-481 -8815)